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번호	

청원연월일 : 2019. 11. 12.

청원자 : 공권력감시대응팀(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다산인권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킹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제안이유

「경찰법」 제3조는 국가경찰의 임무를 규정한 직무조항으로써 경찰활동을 위한 개별적·일반적 수권조항이 아님. 직무조항은 타 기관과의 관계에서 해당 행정기관의 임무범위의 경계를 설정한다는 의미를 가지는 것이므로 그 자체로 수권조항이 될 수는 없음. 하지만 경찰은 「경찰법」 제3조 제4호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를 정보의 수집·분석을 위한 수권규정이란 불법적인 주장을 하고 있음. 또한 이 조항을 정보국 설치를 위한 근거 규정으로 활용하고 있는 실정임.

경찰의 정보활동은 원칙적으로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등 경찰의 종국적인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수단

적·보조적 활동에 해당함. 일반적인 행정기관도 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를 수행하고 있으나 정보활동은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수단적·보조적 활동이므로 별도로 행정기관의 임무로 규정하지 않고 있음. 경찰도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라는 목적을 가지고 구체적인 집행 및 수사라는 임무를 부여받은 ‘행정기관’이라는 점에서 제3조 제4호와 같은 정보활동을 임무규정으로 두는 것이 타당하지 않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함.

또한 ‘치안정보’라는 개념은 정치학, 사회학 등의 관점에서 말하는 “통치”와 밀접하게 관련되는 것으로서 법률조항에 등장할 용어로는 적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경찰의 법률적 임무범위를 위법하게 확장시킬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음. 실제로 경찰은 국민의 일상을 감시하고 정치영역에 개입하는 등 국민이 아닌 임명권자를 위한 정보활동을 수행해 왔음. 따라서 경찰법 제3조 제4호를 삭제하여 이러한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필요함. 이러한 법률 개정이 이루어질 경우 임무범위에서 벗어난 정보경찰도 폐지가 타당하며 이를 위해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 정보국 조항도 삭제되어야 함.

주요내용

1. 경찰관의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임무 삭제(안 제3조)

행정기관의 정보활동에 대해 별도의 임무로 규정할 필요가 없으므로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삭제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호의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를 삭제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직무의 범위) 국가경찰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략) <u>4.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u> 5. ~ 7. (생략)	제3조(정의) ----- -----. 1. ~ 3. (현행과 같음) <u><삭 제></u> 5. ~ 7. (현행과 같음)